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을 제정하면서 현행 「축산법」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함(안 제32조).

II.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「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(대안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김 성 완)